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 (안) 심 사 보 고

1999. 8. 24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9년 8월 10일

○ 회부일자 : 1999년 8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1999. 8. 24)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증평출장소장 심 상 결)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른
출장소장 직급등의 조문 정비와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문정비(안 제3조, 제5조)
 - 출장소장 및 지소장 직급 삭제 → 규칙으로
- 불합리한 사항 정비(안 제6조)
 - 도지사가 따로 정함(직급·정원) →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 김 동 응)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98. 8. 31)에 따른 관련조문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출장소장과 지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 각각 그 직급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 부합하도록 안 제6조를 정비하는 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은 '98년 8월 31일 개정되었음에도 동 조례를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안 제6조 “출장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출장소장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출장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소장 및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조문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조례안 제6조(공무원)중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소장 및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조문대비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1조(설치) 원격지주민의 행정편의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증평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관할구역)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신도시개발사업추진
2. 신도시개발에 따른 계획수립 추진
3.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할구역내 종합행정추진

제5조(지소) ①출장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천지소, 장평지소, 도안지소를 둔다.

②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6조(공무원) 출장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소장 및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례규칙등) 출장소 행정처리에 필요한 조례규칙등은 괴산군 자치법규에 의한다. 다만, 그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별도의 특례조례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북도증평출장소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증평읍 일원 도안면 일원

(별표 2)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증천지소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증평읍 : 증평리, 용강리, 사곡리, 덕상리 남차리, 율리, 죽리, 남하리
장평지소	괴산군 증평읍 교동리	증평읍 : 교동리, 중동리, 대동리, 초중리,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도안지소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도안면 : 화성리, 노암리, 연촌리, 송정리, 광덕리, 석곡리, 도당리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9. 8. 24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안 제6조 “출장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출장소장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출장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소장 및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조문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조례안 제6조(공무원)중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소장 및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공무원)중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소장 및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공무원) 출장소에 소장이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u>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6조(공무원) ----- ----- 소장 및 공무원의 정원은 조 례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p>